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89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배준영 · 박대출 · 이종욱
이상희 · 김종양 · 송석준
김은혜 · 안철수 · 곽규택
김예지 · 김미애 · 서명옥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7년 12월 31일”로,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을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